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

(주)화인자산운용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
- (1)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(2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(3)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2. 차단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

- (1)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2)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동법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(5)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(6)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

3. 정보교류 차단 부문의 설정

- (1)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각 부서로 하고,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부문별 책임자는 각 부서장으로 지정한다.
- (2)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한다.

4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수준

- (1)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 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다.
- (2)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

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.

5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

(1)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거래,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,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임을 준법감시조직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- 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- ②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- ③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- ④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. 다만, 내부규정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율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.
- ⑤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. 다만, 내부규정 등에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.

(2)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
- ②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③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
- ④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- ⑤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(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

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
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

6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대응방안

회사는 이해상충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,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.

- (1)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 승인 및 사후보고 절차를 통해 상시 점검
- (2) 부문간 정보교류에 대한 부문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
- (3)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

7.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및 조직

- (1)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: 준법감시인
- (2)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: 준법감시조직

끝.